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93
------------	------

발의연월일 : 2020. 9. 28.

발의자 : 윤준병 · 김민철 · 이해식
허종식 · 최종윤 · 인재근
장경태 · 강선우 · 김수홍
한병도 · 위성곤 · 송옥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 등과 같은 전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임에도 현행법에서 수의사에 대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변호사 등과 달리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협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의사 직무수행의 윤리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32조의2 신설, 제32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① 수의사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 효력 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 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이 경우 구체적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 효력 정지 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③ · ④ (생략) <u><신설></u></p>	<p><u>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이 경우 구체적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u>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 효력 정지 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은 수의사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u></p>
---	---